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454호

「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 기준·방법·절차·표시,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·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튜닝부품인증 신청서 및 인증서 서식을 정하고, 인용 조항 수정, 중복 조항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등 문구 수정(안 제1조, 안 제2조 및 안 제10조)

나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, 튜닝부품 인증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조항 삭제·수정(제3조 삭제, 안 제8조, 제12조 삭제, 별표1 삭제, 별표2 삭제, 별

지 제1호서식 삭제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)

다.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심의하는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튜닝부품인증 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로 변경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라. 법령에서 위임한 튜닝부품인증 신청서 및 인증서 서식을 정함(안 제7조, 별지 제3호서식 신설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)

3. 의견제출

「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 4. 17. (수)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자동차정책과, 전화 044-201-3840/3841, 팩스 044-201-558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

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, 우편번호 30103)